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

의 안 2284 번 호

제출연월일: 2024. 5. 30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2023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결산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총괄

(단위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 ⑦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
	계 나=다-만	조성액 🛈	사용액 🖭	(回=⑦+①)
7,000,000,000	16,105,516,660	16,105,516,660	0	23,105,516,660

3. 근거법규

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

붙임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보고서 1부.

근 거 법 규

지방재정법

-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에는 각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. 6. 9.〉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〈신설 2014. 5. 28.〉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〈신설 2014. 5. 28.〉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〈신설 2014. 5. 28.〉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지방자치법

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